

KAU 브랜드 위원회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KAU 브랜드 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비전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브랜드 관리 및 홍보 전략 수립을 위해 설치하는 KAU 브랜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브랜드 전략 및 홍보 아이디어를 발굴·기획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하여 자문하거나 의견으로 제시한다.

1. 본교 브랜드 전략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본교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행사와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의 사용·조정에 관한 사항
3.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입시 홍보 전략에 관한 사항
4. 본교 브랜드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브랜드 제고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 및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관계 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증원할 수 있다.
3. 임명직 위원은 본교의 현황을 이해하고 홍보 등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로, 위원회의 추천으로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4. 외부 자문위원은 브랜드 마케팅, 홍보 및 광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5. 학생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며, 본교 재학생을 대표하는 자로서, 학생 자치기구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이외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임명직 위원: 2년
2. 외부 자문위원: 2년
3. 학생위원: 1년

③제1항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신규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명직 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간사) ①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입학처 입학관리

팀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준비, 자료 작성, 회의록 작성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5조(역할)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논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이 관련 부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④임명직 위원은 본교 내부 구성원으로서 브랜드 전략 및 홍보 아이디어의 발굴·기획에 참여하고, 위원회의 전문적 논의에 기여한다.

⑤외부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교 브랜드 전략 및 홍보 방향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제시한다.

⑥학생위원은 재학생들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하여 브랜드 및 홍보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의결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 간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서의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주관 부서 및 회의록)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처 입학관리팀이 주관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 결과의 요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본교의 미공개 정보나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